



이제, 인권입니다

International Convention 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ward
the International Rights Conven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제, 인권입니다

International Convention 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ward
the International Rights Conven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 O. N. T. E. N. T. S

1.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5
2. 권리조약이란 무엇인가?	6
2-1 조약(convention)이란?	6
2-2 국제권리조약(International Rights Convention)이란?	6
2-3 주요 인권조약의 현황	7
2-4 한국이 비준한 권리조약	8
2-5 장애인권리조약에 관하여	8
2-6 국제장애인권리조약 경과	11
3. 퍼즐	17
4. 권리조약과 나	18
5. 권리조약의 올바른 이행을 위한 우리의 역할	20

부 록

방콕권고안	24
8문항 ○ × 문제해설	44
퍼즐정답	47

1. 장애인권리조약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Pre-Test>

Q-1

국제장애인조약을 처음 제안한 나라는 호주이다.

Q-2

우리나라가 최근에 비준한 국제권리조약 중 장애관련내용이 언급된 조약은 1991년도에 적용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뿐이다.

Q-3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관한 기준규칙(Standard Rules)은 장애에 관한 포괄적인 인권기준이다.

Q-4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기존의 6개 핵심권리 조약안에서 실행가능하다.

Q-5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제정운동의 핵심은 장애인당사자단체들이다.

Q-6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복지에서 인권으로의 변화이다.

Q-7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장애인만을 위한 법이다.

Q-8

국제권리조약은 국제선언일 뿐이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법이다.

▶▶▶ 정답과 해설은 44쪽에 있습니다.

2. 권리조약이란 무엇인가?

2-1. 조약(convention)이란?

국제법의 형태를 띤 법의 하나로서 문서에 의한 (국제상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국가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조약은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가 조약 체결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비준을 필요로 하기도하는데,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나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받으려면 의회(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둘에 위반되는 경우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법은 법으로서는 다소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국제법에 위반될 때에는 자조(自助-전통 국제법 하에서는 오직 국가 만이 국제법상의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 국제인권조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제기구가 개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구제의 청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가 인정되며, 집단적인 군사적 제재 등의 실행이 있었습니다.

2-2. 국제권리조약 (International Rights Convention)이란?

UN총회에서 UN가입국의 가부결과에 따라 다수로 가결됩니다. 가결되면 정식으로 국제권리조약으로 발효가 되며, 각 국가별 비준을 받아 비준한 국가에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조약상의 의무를 각국이 제대로 이행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지만,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부분비준을 할 수도 있습니다.

2-3. 주요 인권조약의 현황

〈표 1〉 주요 인권 조약 현황

조 약 명	채 택 일	발 효 일	한 국 가입일	총 당사국수	한국의 가입순서
(1) 국제인권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966.12.16	1976.1.3	1990.4.10	147	94
(2) 국제인권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	1966.12.16	1976.3.23	1990.4.10	149	88
(2)-1 동 선택의정서	1966.12.16	1976.3.23	1990.4.10	104	50
(2)-2 동 제2선택의정서	1989.12.16	1991.7.11	미가입	49	-
(3) 제노사이드협약	1948.12.9	1951.1.12	1950.10.14	134	17
(4) 난민자위에 관한 협약	1951.7.28	1954.4.22	1992.12.3	142	112
(4)-1 동 의정서	1967.1.31	1967.10.4	1992.12.3	140	114
(5)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1954.9.28	1960.6.6	1962.8.22	55	12
(6)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1961.8.30	1975.12.13	미가입	27	-
(7) 인종차별철폐협약	1966.3.7	1969.1.4	1978.12.5	168	99
(8)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12.18	1981.9.3	1984.12.27	174	61
(8)-1 동 선택의정서	1999.10.6	2000.12.22	미가입	54	-
(9) 고문방지협약	1984.12.10	1987.6.26	1995.1.9	134	87
(9)-2 동 선택의정서	2002.12.18	미발효	미가입	6	-
(10) 아동권리협약	1989.11.20	1990.9.2	1991.11.21	192	100
(10)-1 무력분쟁개입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0.5.25	2002.2.12	미가입	55	-
(10)-2 아동매매, 매춘,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0.5.25	2002.1.18	미가입	61	-
(11)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1990.12.18	2003.7.1	미가입	22	-

▶자료: UN Treaties Database 기준, 작성 기준일: 2003년 8월 14일(작성: 정인섭)

2-4. 한국이 비준한 권리조약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권리조약(6대 권리조약)

1.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국내적용일 1990.7.10)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국내적용일 1990.7.10)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국내적용일 1985.1.26)
4.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국제조약(국내적용일 1995.2.8)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국내적용일 1991.12.20)
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국내적용일 1979.1.4)

8

9

○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구현되어야 할 원리

- 1) 비장애인과 동일한 범위의 인권을 향유해야함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 2) 차별금지와 기회균등을 보장, 장벽철폐를 위한 '편의제공' 결여와 '적극적 조치'의 결여는 차별임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 3) 영양, 수질문제, 공중위생, 빈곤완화, 사회보장교육, 고용과 같은 기본적 욕구충족을 인정하여 본질적인 사회-경제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곧, 인권 기반적 발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 4) 장애의 종류와 정도,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국적 상 지위의 차이를 막론하고 장애인에게 차별금지와 기회균등의 원리를 적용할 것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 5) 감시와 검토과정에서 모든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2-5.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관하여

○ 장애인권리조약의 목표

- 1) 유엔인권헌장에서 주요하게 보장되고, 6개 핵심 권리조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전 영역에 걸쳐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2) 장애에 관련하여 시혜주의 모델적 접근으로부터 인권적 접근으로의 패러다임 이동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 3) 장애인의 권리 기반적 발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장애인단체 및 인권단체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정의

- 1) 장애의 정의는 기능, 장애, 건강 국제분류(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 ICF)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2) 장애는 단지 의학적 진단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요인이 인간이 경험하는 장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 3) 장애는 신체적, 감각적, 지적, 실리-운동적 장애와 중복장애를 포함하고, 장애는 영구적이고 현실적이며 지각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 1) 장애인 인권의 보편성
- 2) 장애의 정의
- 3) 장애로 인한 차별의 정의
- 4)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국가 정당의 의무
- 5) 기존의 6대 권리조약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
- 6)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구제절차

○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실행에 대한 검사 및 평가 메커니즘

- 1) 각 국정부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하며, 그 보고서에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 2) 조약의 감시·평가를 위한 장애유형별 당사자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3) 기존의 다른 UN조약들과 일치하는 장애인권리조약 실행의 감시 및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2-6. 국제장애인권리조약 경과

- 1) 82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기회평등을 실현하고 자하는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에 인권과 장애 관련 항목 포함 되었다.
 - "인류에게 보편적인 인권과 자유를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의 능력을 억제는 특정 제한이 존재할 수 있다. UN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제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66절)
 - "고문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 침해는 정신 및 신체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런 침해에 대해 적절한 개선 행동을 고려하여야 한다."(168절)
- 2) 1984년 8월에 개최된 소외계층의 차별 금지 및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에서는 특별 보고위원으로 Leandro Despouy를 임명하여 인권과 장애에 관련해서 총체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1993년에 출간된 보고서에서, 장애가 인권 문제라는 점을 명시함.
- 3) 1987년 UN 총회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3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제안하였다. 정부 측 입장은 Maria Rita Saulle 교수 가 발표하였고, Saulle 교수는 스토훌름 회의에 참가하여 UN 장애인 10년의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전문가로서 UN 총회에 제안을 직접 제시하였다. 이 제안은 재정적인 이유로 호주, 일본 및 영국 등의 회원국으로부터, 그리고 기존의 세계인권조약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북유럽 회원국으로부터 지지 받지는 못하였다.
- 4) 1989년 스웨덴 정부가 현재 기준규칙(Standard Rules)의 특별보고위원인 사회부 Bengt Lindqvist 장관에게 협정의 제안을 재차 내도록 했으나 충분한 지지를 받지는 못하였다.

5) 2000년 2월, 중국 정부가 조약과 관련된 제안서를 UN 사회개발위원회에 제출하여 대부분의 개발국가들은 호응하였으나, 미국과 같은 몇몇 선진국가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6) 1996년, 1998년, 2000년 UN 인권위원회에서는 경우에 따라 모두 다른 결의문을 발표하였고, 결의문은 모든 기구를 감시하는 조약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장애인의 인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국 배제되고 소외된 장애인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UN 인권 실체 문제로서 국제적으로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2000년 베이징선언 : 2000년 3월 10일~12일 베이징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평등권을 위한 신세기 전략의 개발에 관한 세계NGO 정상회담이 열림.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II(Inclusion International), RI(Rehabilitation International), WBU(World Blind Union), WFD(World Federation of the Deaf)등 장애인 관련 국제 NGO 단체들이 참가. 이 회의에서는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을 요청하였다.

12

신세기 장애인 권리에 관한 베이징 선언 제7조

우리는 다음을 주장한다. 모든 정부의 수장, 공무원, 지역 정부, UN 단체 회원국, 장애인,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적 분야 조직체들은 앞으로 열릴 국제포럼, 특히 사회개발에 관한 UN총회 특별회의, NGO 밀레니엄 포럼, UN 밀레니엄 총회 및 정상회담 등 관련 예비회의에서도 국제조약을 제안해야 한다.

8) 2001년 멕시코 제안 : Vincent Fox 멕시코 대통령이 2001년 9월 열린 제56차 UN총회 제3위원회에서 조약을 작성하기 위한 회원국들과 옵서버의 참석을 허용하는 위원회(Special Committee)의 설립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멕시코의 제안서에 대한 응답으로, 국제NGO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2001년 12월 19일, 총회는 제안서를 채택.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

리와 위엄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총체적, 통합적 국제조약에 관한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9) 2002년 7월 제1차 UN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촉진을 위한 포괄적인 국제조약에 관해 논의하였으나 유엔 190개국 중 참가국은 60개국 뿐이었다. 앞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응이 조약 체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 2002년 5월 UNESCAP '21세기 아태지역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인 무장벽 인권사회'를 향한 아태장애인10년(1993~2002년)의 연장을 위한 새로운 아태장애인10년(2003~2012)을 선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58/4).

• 연장이유 – 아태장애인10년(1993~2002)의 12정책 영역 중 국가적 조정, 입법, 장애발생 원인의 예방, 재활서비스, 적절한 물리적 환경, 장애인 자조단체영역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교육을 비롯한 다른 영역은 진전되지 못했기에 10년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11) 2002년 10월 열린 UNESCAP 고위급정부간회의에서 새로 연장된 아태장애인 10년에서 아태지역에서 정책지침으로 쓰여 질 BMF(Biwako Millennium Framework for Action towards an inclusive, barrier-free and rights-based socie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 태평양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인 무장벽 인권사회를 향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가 채택하였다.

BMF내용 – 아태지역 각 국정부들이 장애인권리를 고려한 정책을 만들기를 권장하고, 장애인의 권리촉진을 위한 목표와 전략에 이를 적용하고 또한, Ad. Hoc. Committee를 적극 돋고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졌다.

또한 새로운 실천과제로 7가지 영역을 확인하고 있고, 각 영역들은 주요 협안, 목표 –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13

①장애인의 자조단체와 가족 및 부모모임

②장애인여성

③조기발견, 조기중재 및 교육

④자영업을 포함한 훈련과 고용

⑤물리적 환경과 대중교통에의 접근

⑥정보, 의사소통

⑦능력구축, 사회보장과 프로그램을 통한 빈곤경감.



14



▲ 뉴욕 UN특별위원회 모습 – UN Hoc Committee

12) 2003년 4월 장애인 기준, 표준과 관련된 미주지역세미나와 워크숍을 가졌다.

13) 2003년 6월 UNESCAP 장애인인권 및 존엄성 증진과 보장을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조약 제안서를 채택하였다.



15



▲ 방콕워크숍 모습

14) 2003년 6월 제2차 UN 특별위원회 지난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2차 UN특별위원회에 참석한 85개 회원국과 대표단 및 장애인NGO 단체들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 증진과 보장을 위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조약(이하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특별위원회 최종결의문에 따라 실무단체(Working Group)를 구성하기로 7월 24일 전격 합의했다.

총 12개의 지분이 주어진 NGO 대표단의 경우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장애인 NGO들의 회의를 통해 국제장애인연대(IDA,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에 속한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II(Inclusion International), RI(Rehabilitation International), WBU(World Blind Union), WFD(World Federation of the Deaf), WFDB(World Federation of the Deaf-Blind), WNUSP(World Network of Users and Survivors of Psychiatry)등 7개영역의 국제 장애인단체에 각각 1개의 대표권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5개 대륙에서 지역별로 1명씩을 지명하기로 했다. 그리고 27개의 지분이 주어지 GO(정부)는 대륙별로 아시아 7, 아프리카 7,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그룹 (GRULAC) 5, 서유럽과 기타 그룹(WEOG) 5, 동유럽(EEG) 3이다.

그 중 한국이 속한 아시아지역은 중국, 일본, 태국, 인도, 레바논, 필리핀, 그리고 한국정부가 실무단체에 참가할 의사를 표명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아시아지역의 GO에 할당된 7개국 중 한 국가로 참가가 확실시 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GO대표를 NGO 인사로 할 것임을 표명한바 있다.

3. 퍼즐문제

문제	1	1	1		1	1	1	4		1	1	1	3	1	1	1	5	1	1	1
	5	1	1	2		1	1	1	1	1	1	1	5	3	1	1	1	1	1	1
	6	1	1	2	5	6	4	4	1	1	2	5	6	1	1	6	0	1	1	2
1.1.1.1.1.1.1.1																				
1.1.1.1.2.2.1.1.2.1																				
5.1.1.1.1.1.1.1.1.1																				
1.1.1.1.1.5.1.2																				
1.1.3.1.1.1.1.1.1																				
0																				
3.1.3.1.1.5.3																				
1.1.1.1.1.1.1.1.1																				
1.1.1.1.4.1.3																				
3.1.1.3.1.1.1.1																				
1.1.1.1.1.1.1.1.1																				
1.1.1.3.1.1.1.3																				

*로직을 푸는 기본적인 원칙

- 1) 가로, 세로 각 행과 열에 숫자만큼 칸을 연속적으로 칠한다.
- 2) 한 줄에 숫자가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순서대로 칠해나가되, 두 숫자 사이에는 1칸 이상의 공백이 있어야 한다.
- 3) 큰 숫자를 찾는다. – 중간에 겹치는 부분을 찾는다.
- 4) 칠할 수 없는 곳에 X표시를 한다. – X표시를 하다보면 또다시 칠할 부분이 생긴다.
- 5) 완성... 그림이 뭔지 알아본다.

▶▶▶ 정답과 해설은 47쪽에 있습니다.

4. 권리조약과 나

국제조약은 유엔의 결의를 거쳐 유엔의 회원으로 가입한 국가들은 이를 비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조약의 비준여부는 개별국가의 장애인인권신장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것이며 또한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많은 장애인 관련 선언이나 세계행동계획, 기준규칙과는 달리 국내법에 준하는 법적 실효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조약에 비준하는 국가는 조약의 내용을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이행해야 하며, 더불어 국제사회에 그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약은 각 개별국가가 조약에 비준하는 순간부터 조약의 이행을 위해 제반 법, 제도 등을 정비해야 하며, 정책들을 내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안(현재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몇몇 국가에서 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논의를 위한 초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시는 여러 안중 한 가지를 예로들어 놓은 것입니다.)으로 제출된 내용을 보면 조항 3, 1의 C호에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는 적절한 법률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비준한 국가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률의 수립을 위한 후속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제정을 위해 장애인단체들이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침해되거나 존엄의 훼손을 막고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의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정부는 조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제정 후에 이에 대해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문건의 조항 3, 2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생활의 모든 활동들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채택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국가는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이동권, 접근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정비와 아울러 구체적인 성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해줄 법령이 취약하거나 미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의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정비와 아울러 예산의 편성, 구체적인 계획 등을 수립하여 유엔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각 국가의 장애인 개개인의 삶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이행에 대해 얼마나 장애인의 요구가 반영되고 있으며 실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하는 보고서에 한국의 상황을 올바르게 보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감시를 하여야 하며, 정부의 이행이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미치지 못하거나 장애인의 요구가 반영이 되지 않을 때는 이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있을 때 정부도 좀더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며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재활 및 시혜주의 모델적 접근으로부터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적 접근으로의 패러다임 이동을 천명한다는 점, 유엔인권현장에서 주요하게 보장되고, 6개 핵심 권리조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쳐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발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 권리조약의 올바른 이행을 위한 우리의 역할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유엔에서 공식 논의가 시작된 것은 16년 전입니다.

16년 동안의 장애인단체들의 힘겨운 투쟁과 노력으로 이제 국제사회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제정하기 위한 그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권리조약의 내용에 대한 각국의 치열한 논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엔 회의의 참석은 각국 정부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권리조약의 최종안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장애인단체들도 참관자로 참석을 하여 그 논의과정을 지켜볼 수 있지만 조약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의 주체는 각 국가의 대표입니다.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부의 의지 여부에 따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장애인의 이해요구가 반영되는 권리조약이 제정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 스스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정부가 조약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개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공개적인 창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반영하는가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의 장애인단체들이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한국장애인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해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를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연대는 정부의 활동을 계속 지켜보며 얼마나 올바르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조약에 한국 장애인들의 상황이 고려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안을 만들어 이를 정부와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나가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450만 장애인 개개인이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와 활동이 정부에게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제정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힘이 되며 장애인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1.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해 주변의 장애인들에게 널리 홍보합시다.
2.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담당하는 부서에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의견을 올립시다.
3. 정부의 활동에 대한 일정 및 자료를 모든 장애인들이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촉구합시다.
4.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의 활동에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 합시다.
5.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의 활동에 적극 참여 합시다.
6.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안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합시다.

이제, 인권입니다



방콕권고안

8문항 ○ ×, 문제해설

퍼즐정답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을 증진시키고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조약문 작성에 대한 방콕 권고안 (Bangkok Recommendations)

24

A 배경 및 일반적 접근 (BACKGROUND AND GENERAL APPROACH)

1. 국제적인 인권의 표준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기본적 인권을 향유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전 세계를 통틀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넓게 퍼진 인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영양실조, 강제 피임, 성적 착취, 교육 및 직업 훈련기회의 박탈, 접근할 수 없는 공공 서비스, 시설 수용, 투표권 박탈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조약을 만들어야 할 강력한 요구가 있다. 국제법에서의 장애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은 현재의 조약 체계아래서는 발전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배타적인 조약은 기존의 국제적인 문서들과 감시 체계를 개정하는 것을 통해서는 달성될 수 없는 장애 문제들에 대해 '지위, 권위와 선명성'을 주기 위해 필수적이다.

3. 하나의 포괄적인 조약은 각 국가별로 장애 통합적인 하부구조와 진행과정들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그들의 의무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조약을 추가로 만드는 것은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권리 를 위한 기존의 국제 표준들을 보완할 것이다.

4. 새로운 국제조약은 인권조약이 돼야한다. 또한 그것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인간에 적용되는 것임을 재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나 기준규칙(Standard Rules for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같이 사회복지적인 접근에서부터 인권기반적인 모델로의 움직임을 반영해야한다. 새로운 인권조약은 모든 종류의 발전의 관계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 새로운 조약은 기존의 ILO와 같은 전문적인 기구들에 의해 채택된 것을 포함한 UN인권조약들과 기준규칙 같은 다른 규범들에 규정돼 있는 인권 규범 들을 재확인하고, 그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새로운 조약은 그러한 조약 들에 의한 기존의 권리 보장책들을 절대로 감소시켜서는 안 되며 기존의 권리 보장책을 적절하게 보완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사들을 다뤄야 한다.

6. 새로운 조약은 시민·정치·경제적·권리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책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장받아야 할 모든 권리에 대한 침해들에 대비해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수준의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7. 새로운 조약의 제정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 실현과 인간과 사회의 발전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25

- a) 기존의 인권 기구들과 체계는 그들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장애 문제들을 다루는 노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 b) 기준규칙의 이행을 감시하는 '인권보고인'(Special Reporter on Disability of the Commission on Social Development) 및 전문가 조사단의 업무에 대한 강한 지지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c) 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시민사회 · 그룹(DPOs-Disabled People's Organization나 NGO를 포함해)은 WPA나 BMF와 같은 장애 이슈를 다루는 다른 법률이나 프로그램들을 이행하는 것이나 기준규칙을 이행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현실화시키는 국가 제도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 인권기구나 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적절한 국가 수준의 기구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26

8. 회원국가들이나 유엔 산하의 기구들은 조약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장애 그룹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정부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UNVFD(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on Disability)에 헌신하도록 요구된다.

아태지역의 모든 정부들은 조약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위해 DPO들의 조언을 수렴하거나 유엔총회 결의문 56/168에 의해 설립된 특별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DPO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특별위원회에 파견할 정부의 공식 대표단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조약의 요소들 (ELEMENTS OF A CONVENTION)

조약의 본질 (NATURE OF THE CONVENTION)

9. 조약은 포괄적인 것이 돼야 한다. 그것은 UDHR, ICCPR, ICESCR 등 기존의 인권 조약에 포함된 권리의 명백하게 재천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약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평등과 차별금지의 권리에 대한 단순한 진술서보다 더 진보적인 것이어야 한다.

UDHR=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CCPR=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ESC=Convention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7

구조(STRUCTURE)

10. 이번 회의에서 조약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논의했다.

- 서문(Preamble)
- 목적들과 일반적 원리들의 진술문
(Statement of objectives and general principles)
- 범위/정의들(장애와 차별의 정의들을 포함해서)
(Scope/Definitions) (including definitions of disability and discrimination)

- 조약에 보장된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일반적 의무사항들
- 평등과 차별금지 보장책
(일반적으로 또는 성평등 조약에서 보장돼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 구체적인 권리들의 보장책
(보다 확장된 장애에 관점을 갖고 있는 UDHR, ICCPR, ICESC 등 다른 조약들의 기초가 있는)
 - UDHR=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ICESC=Convention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기타 국가의 의무사항들
- 감시 장치
- 기타 조항들

서문(Preamble)

11.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문제들이 서문에 유용하게 언급돼야 할 것이라고 심사숙고됐다.

- 기존의 유엔 인권조약들의 국제적인 인권보장책들의 가치 인정.
-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권과 차별금지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에 대해 상술하고 있는 국제적 혹은 지역적인 수준의 법률 문서들, 선언들, 규범들, 그리고 지침들의 인정.

- 국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부정이 널리 만연돼 있는 것에 대한 인정.
- 주류의 인권 제도들에 의해 장애 문제들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약을 채택하는 것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과 그들의 대표적 기관들이 적절한 대처와 조치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
- 조약의 해석과 이행과 관련해 기준규칙의 적절성에 대한 주목.
- 아태장애인10년(1993~2002) 기간동안의 노력, 성과물, 장애에 대한 인정.
- 장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BMF, MDAICT, WSIS 등과 같은 지역적 법률문서들의 확인
 - BMF : the Biwako Millennium Framework (reaffirmation).
 - MDAICT : the Manila Declaration on Accessib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WSIS : the World Summit for Information Society

목적들과 일반적 원리들의 진술문 (Statement of objectives and general principles)

12. 조약의 해석과 응용의 기초가 되는 조약의 목적과 기초적 원리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약의 원리와 목적에 대한 진술문은 기존의 조약들을 지탱하고 있는 지배적인 가치인 존엄과 자주, 평등과 연대, 그리고 '대리 참여'에 대해 확인하는 참조물을 포함해야 한다.

13. 조약은 아래야한다.

- a) 사회 정의 시민권, 복지를 다루고 있는 국제 인권 규범 및 표준들을 근거로 마련된 권리 기반적인 문서가 돼야한다. 기존의 인권표준들 보다 아래의 기준들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 b)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든 차별금지, 평등, 존엄, 자주의 원리에 근거한 모든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향유하고, 그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 c) 모든 장애인 그룹의 상황과 성, 인종, 피부색, 나이, 민족 등과 연관된 여러 가지 상황은 틀림없이 참작돼야하는 것이 강조돼야한다. 또한 장애를 가진 여성, 아동, 원주민 등과 같은 개인들이 직면하는 이중적인 불리함이나 다중적인 차별의 충격을 인지해야한다.
- d) 차별금지와 기회 평등의 원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나 그들의 조직 문제들에 대해 적용돼야한다는 것을 보장해야한다.
- e) '정당한 편의제공' (reasonable accommodation) 혹은/그리고 '완전한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 (positive action)에 대한 근거 조항의 미비는 일종의 차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 f) 첫 번째로 권리들이 시행력이 있다는 것을 포함해야한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책을 종합해 내야한다.
- g) 조약에 대한 감시나 이행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조직의 참여를 위한 체계가 마련돼야한다.
- h) 국가의 노력들을 지지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해야한다.

30

- i) 정부와 DPOs들의 국가수준에서의 협력을 증진해야한다. 또한 DPOs들의 성공적인 주도권에 대한 인정을 보장해야한다.
- j) 통합적이고 장벽없는 사회를 증진해야한다.
- k) 정책 결정과정이나 의견수렴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와 비례적인 대표권을 촉진해야한다.

정의들(DEFINITIONS)

14. 조약은 장애와 차별,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야한다.

31

장애(Disability)

15. 국제적인 수준에서 채택된 장애에 대한 일련의 정의가 있다. 이것은 장애에 대한 이해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WHO-ICF 정의가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특히 정신 장애인의 생존과 관련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의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16. 조약은 장애가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결과라는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장애의 정의를 포함해야한다. 신체적, 감각적, 지적, 정신적, 그리고 다중적인 장애를 포괄하는 모든 종류의 손상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있어야만 한다.

17. 장애의 정의를 기술할 때, 개인은 손상을 갖고 있지만 장애는 개인의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돼야한다. 이것은 사회적 정체성 및 행동에 대한 일련의 함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상황에 크게 따라 달라진다. 장애는 또한 아마도 차별과 편견, 배제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18. 장애의 정의는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이것은 신체적, 감각적, 지적, 정신적 그리고 다중적인 장애를 포함해야한다. 또한 장애는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이거나 지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 것을 인정해야한다.

차별과 평등(Discrimination and Equality)

19. 차별의 정의와 관련해서 조약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의도적이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구조적인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뤄야한다. 또한 조약은 기존의 국제적인 정의들을 기술하고 있는 장애에 근거한 차별의 정의를 포함해야한다. 단 기존의 국제적인 정의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관련한 평등과 차별의 독특한 본질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할 수 있다.

20.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약'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국제조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직업과 고용 차별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조약'(ILO Convention No 11 on Discrimination in Occupation and Employment), 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ttee)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의해 차별의 정의에 대해 취해온 지속적인 접근이 있다. 차별은 평등에 기초하고 있는 인권의 인정, 향유와 행사를 손상시키고 무효로 하기 위한 목적 혹은 효과를 갖고 있는 '금지된 특성' (예를 들면 장애)에 근거해 '차이, 배제, 제한' 등이 있는 곳에 존재하고 있다.

21. 차별의 정의는 아래야한다.

- a) 권리와 자유에 대해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제도, 관행, 사회구조 등을 포함해 직접적이거나(다른 대우) 간접적이거나(다른 영향)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인 차별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b) '정당한 편의제공'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차별로 포함해야한다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General comment'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정의를 포함해야한다.
- c)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긍정적 조치'를 명료하게 설명해야한다.(몇몇은 지속돼야하는것이고, 몇몇은 단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 조치와 차별의 정의와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한다.
- d) 완전한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줄이고 제거하는 것, 기회의 평등, 대우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 '긍정적 조치' 혹은 '특별한 구제책' 이 차별적인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 e) '기회의 평등'은 장애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야기된 어떤제한 혹은 한계가 적당한 수정이나 조정 혹은 도움으로 구제받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f) 차별은 장애(intersectionality ; 중첩성)-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여성이나 장애를 가진 원주민을 들 수 있다-를 포함해 다중적인 근거들을 이유

로 '다른 대우'가 이뤄지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장애를 다르게 대우하는 곳이거나 '다른 대우' 때문에 개인이나 그룹이 '다른 결과'를 얻는 곳에 차별이 있다.

- g) 그들의 연합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항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보호 장치도 포함돼야 한다.
- h) 장애를 의심하거나 거짓으로 여기거나 확인하려고 하면서 발생하는 차별, 혹은 차별이 과거의 장애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도 제공해야 한다.

22. 평등의 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인지해야한다. '기회의 평등'은 장애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야기된 어떤 제한(restrictions) 혹은 한계가 적당한 수정이나 조정 혹은 도움으로 구제받아야 된다는 필요를 인지해야한다.

또한 기회의 평등은 완전한 참여를 위해 모든 환경에서 장벽이 없는 접근성을 제공하거나 또는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조치', '정당한 편의제공' 혹은 '특별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조치나 구제책은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채택되는 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이어야 하는지 결과의 평등이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됐다.

34

35

접근성(Accessibility)

23. 모든 조약의 중요한 요소였던 접근성의 개념은 조심스럽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정의가 제안됐다.

접근성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신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혹은 인식적인 수준에서) 사물과 서비스의 수단 혹은 상황을 의미한다. 모든 종류의 장애와 상관없이 디자인이나 개조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와 관련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접근성'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나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 (i) 물리적이거나 이미 구축된 환경 혹은 대중교통으로의 접근
- (ii) 정보, 의사소통 또는 보조 공학을 포함해 정보와 의사소통으로의 접근

* 위의 정의는 지난 2002년 6월 20일에서 22일까지 방콕에서 열린 아태 지역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ICT 접근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로부터 차용됐다.



반적 의무사항들(GENERAL OBLIGATIONS)

24. 조약은 각 국가들이 조항들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사항에 대한 명확한 진술문을 포함해야한다. 특히 조약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에 대비한 구제책을 존중하고, 보장하고, 마련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포함해야한다.

각 국가들에게는 조약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입법적이고 프로그램적이고 정책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각 국가들은 조약에서 정한 권리에 대한 침해를 대비한 조약 이행 기구를 존중하고, 보장하고, 마련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구제책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의 혹은 입법상의 구체적인 보장책을 포함해야한다. 각 국가들은 할 수 있는 환경과 장벽이 없는 사회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36

25. 조약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비정부기관 행위자들의 행위와 관련해서도 각 국가별 의무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26. 각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또는 조약에 보장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과 차별금지의 보장책을 마련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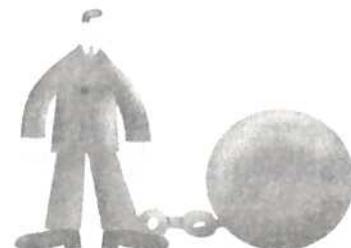
평등과 차별금지의 보장책 (GUARANTEE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27. 조약은 ICCPR의 26 조항에 정해진 것처럼 차별금지와 평등에 대한 그 자체로 독립적인 보장책과 조약에서 파생된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평등과 차별금지의 일반적인 보장책을 포함해야한다.

-ICCP=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8. 조약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평등과 차별철폐와 관련해 여성과 남성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참조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37



구체적인 권리들의 보장책 (GUARANTEES OF SPECIFIC RIGHTS)

29. 조약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재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약은 구체적인 권리 보장책에 대한 진술문을 포함해야 한다. 그것은 UDHR, ICCPR, ICESCR 등의 법률문서들에 포함돼 있는 권리들에서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평등에 기반을 둔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좀 더 상세한 문서를 만들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관점을 반영하는 공식문서를 만들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 '아동 권리 조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All Rights of the Child)이나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의 권리에 관한 조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은 이러한 접근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다.

- UDHR=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ICCPR=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ESC=Convention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30. 이번 회의는 모든 권리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평등한 기반 하에서 그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향후에 작성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많은 예시들이 주어져 있다.

- a) 표현의 자유와 소수그룹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언어적인 권리의 지지하기 위해 도출돼야 할 것이다.(특히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하기위해 수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의사소통 시스템에 실질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수화교육 및 수화 통역 서비스를 가질 수 있는 권리)

- b) 사적 혹은 가족의 삶을 존중할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성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c) 자유와 안전의 권리와 잔혹한, 비인간적인, 지위를 떨어뜨리는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는 강제적인 중재 및 '공공시설 수용과 관련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 d) 국적과 이민과 관련된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해 이주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지지하면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 e)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적 참여에 대한 권리는 의사결정과정에서 DPOs(Disabled People's Organization)의 완전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31. 회의는 또한 몇 가지의 인권의 함축성은 논쟁적이었다는 것에 주목했다. 삶의 권리와 유전적 상담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나 혹은 낙태의 권리의 함축성의 예시가 언급됐다. 조약은 이러한 논쟁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쟁을 필수적으로 해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인정됐다.

32. 기존의 인권보장책의 구체적인 해석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조약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될 수 있을 수많은 추가적인 관점을 혹은 기준의 권리의 측면들을 확인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 a) 참여의 권리/포함의 권리
- b) 물리적 환경에의 참여의 권리(장소, 서비스 또는 편의시설에의 접근을 포함해)/장벽없는 사회의 권리

c) 정보에 접근하거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그것은 실질적인 접근을 위하여 구체적인 개조를 반영해야한다.)

d)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e)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공동체 안에서 자립생활(IL)할 수 있는 권리

* 자립생활의 용어는 조약의 본문 안에서 명확히 설명하거나 정의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주목됐다.

f)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g) 안전에 필요한 식량과 물을 포함해 기본적 경제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h) 시골지역에 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지위는 매우 중요한 측면에서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들.

33. '정당한 편의제공'의 개념이 독립적인 권리로 포함돼 보여지는 것이 나온지 차별의 개념의 일부로 이해되는 것이 나온지에 대한 약간의 토론이 있었다. 또한 발전의 권리와 같은 제3세대 권리조약안에 포함해야할 것이라는 논의가 약간 있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약 제안서 안에 그러한 종합적인 권리가 포함하는 복잡함보다 발전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보장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조약 자체에 발전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보다 발전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는 합의를 했다.

40

기타 국가의 의무사항들 (OTHER STATE OBLIGATIONS)

34. 조약은 각 국가들이 받아들이는 다른 보장책을 다루는 조항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a) 조약에 대한 준수를 감시하고 촉진할 수 있는 국가 기구에 대한 조항.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b) 장애 통합적인 하부구조와 과정들의 발전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조항

c)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연합을 위해 접근성을 마련하고 보장하도록 각 국가별로 요구되는 조항들.

d) 조약을 보고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의 통계자료나 자료들을 위한 조항.

e) 조약에 대한 인식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각 국가별로 요구되는 조항들.

f) 조약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원들을 비축하고 DPOs의 활동에 대한 지지를 마련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요구되는 조항들.



41

국제적 또는 지역적 (International and regional) 감시 체계 (MONITORING MECHANISMS)

35. 이번 회의는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수많은 국제적, 지역적 또는 하위지역적, 국가적 수준의 체계가 있다는 것이 논의됐다. 감시가 지역적 혹은 국가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인지됐지만 UN의 인권조약들 하에서 설립된 비슷한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의 설립은 조약의 중심요소로서 제시됐다.

36.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 분야에서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약의 조항에 대해 각 국가별로 이행하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조약 기구가 설립돼야 할 것으로 심사숙고됐다. 이 체계는 국가 체계가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권리의 위반에 대한 주장을 심사숙고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감시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떠한 감시 체계도 각 국가별 조약 이행에 대한 독립적인 사정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37. 위원회는 각 국가별로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약에 보장된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개인들의 민원을 받을 능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심각하고 구조적인 조약의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의 상황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나라에 대한 다른 나라의 민원을 심사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38. 그 위원회의 구성원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구분에서 DPOs를 포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UN에 의해 생산된 조약과 관련한 정보는 사용 가능하고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39. 새로운 조약 위원회의 설립 이외에도 지역적인 정부간 기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이행에 대해 감시하도록 격려돼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혹은 앞으로의 지역 인권 협장들이나 감체계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명백히 포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조약의 이행을 감시할 수 있고, 새로운 위원회의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과 같이 특별한 언급은 BMF 감시체계에서 제시돼있다.

국가 체계(National mechanisms)

40. 조약은 국가 제도적인 구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각 국가별로 조약에 대한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시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제도 안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원을 다루고, 홍보, 소송, 감시 및 보고 기능을 위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 제도적 그리고 혹은 사법적인 체계안에서의 구제책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강제력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러한 국가 기구들은 적절하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심사숙고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DPOs들을 포함하는 국가적 수준의 상담기구의 설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Pre - Test 정답 및 해설

X-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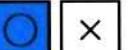
이탈리아 정부는 1987년 UN 총회에서 3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제안했다. UN 장애인 10년(1982~1991년)의 중간평가를 실시, 전문가로서 UN 총회에 제안을 직접 제시했으나, 재정적인 이유로 호주, 일본 및 영국 등 회원국으로부터, 그리고 기존의 세계인권조약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북유럽 회원국으로부터 지지 받지는 못했다.

**X-2**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권리조약(6개 핵심권리조약)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국내적용일 1990. 7. 10)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국내적용일 1990. 7. 10)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조약(국내적용일 1985. 1. 26)
4.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국제조약
(국내적용일 1995. 2. 8)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국내적용일 1991. 12. 20)
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국내적용일 1979. 1. 4)

이중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서만 장애아동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X-3**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관한 기준규칙(Standard Rules on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993)은 장애에 관한 포괄적인 인권기준이 아니다.

기준규칙은 1989년 장애인권리조약을 만들려는 시도가 실패한 뒤 반대가 많은 조약 말고 정책문서를 만들자는 스웨덴 정부의 제기에 따라 성립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권리조약에서 갖추고 있는 것과 같은 정부보고제도도 없다. 또한 기준규칙에서 정한 22개의 실행규칙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에 충분치 못하고 포괄적이지도 못하다.

– 예를 들어 테레지아 테크노에 의하면, 기준규칙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영역에 치우쳐 있어서 자유권침해(강제불임수술, 무력분쟁하에 서의 인권침해, 형별이나 과학실험에 관련된 비인간적이고도 모욕적인 처치 등)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 또 사회개발위원회의 장애에 관한 특별보고자인 벤クト 린크비스트도 장애아나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여성, 주거 전반 등에 관한 규정이 충분히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X-4**

기존의 권리조약이 포괄할 수 없다고 판단된 여성, 난민, 아동권리등 소수자영역에 관한 조약은 있지만, 소수자 영역 중 대표적(WHO 장애추정인구 전체인구의 10%)인 장애인에 관한 포괄적인 조약 없이, 다른 영역의 일부분으로서 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장애는 인권의 문제이다. 국제사회에는 장애인의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선언 등이 다수 있지만,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강제력 있는 수단은 없다.



Pre - Test 정답 및 해설

X-5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DPI(국제장애인연맹)를 비롯한 IDA(국제장애인연대), WBU(국제시각장애인연합회)등 국제 장애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권리조약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권리조약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장애인NGO들의 노력으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2003년 6월 제2차 UN 특별위원회의 결과 조약문 작성 기초 작업을 수행할 실무단체(Working Group)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X-6**

장애인권리조약은 시혜주의 모델적 접근으로부터 인권적 접근으로의 패러다임 이동을 천명하는 것이다. 장애는 인권의 문제이다. 국제사회에는 장애인의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선언 등이 다수 있지만,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신장을 위한 강제력 있는 수단은 없다.

유엔인권헌장에서 주요하게 보장되고, 6개 핵심 권리조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전 영역에 걸쳐 권리의 인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권리 기반적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X-7**

유엔 인권위원회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만들었다. 그리고 장기간의 작업 끝에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보다 세분하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 조약으로 발전시킨 것이 1966년에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었다. 국제인권조약 이후 인종차별, 여성, 아동 등 세부 주제별로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이 연속으로 채택되었는데,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이 충론에 해당한다면, 이후 특정 주제별로 제정된 인권조약들은 각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조약도 각론에 해당되지만 그 근본은 인권으로 귀결된다.

**X-8**

우리나라는 이미 아동, 여성 등 6개 핵심권리조약을 비준하였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UN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국제조약은 UN회원 국가들이 국가별의 감시기구를 통하여 평가하고, 보고를 받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국제법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비준한 국가는 그 실행을 위한 강제적 구속력과 실행력을 추구하기 위한 법적, 제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한국DPI · 에이블뉴스 공동주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비준 및 국내이행을 위한 공동캠페인

한국DPI · 에이블뉴스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알리고 한국의 조기비준을 위해
여론을 형성하며, 장애인권리조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보용 책자와 시디롬 제작
- 인터넷 홍보(www.dpikorea.org/un)
- 좌담회와 강연회 개최
- 권리조약 비준 및 국내이행을 위한 서명운동

공동주최  **한국DPI · AbleNews**

한국DPI : TEL. (02)457-0427 · FAX. (02)458-0429 · <http://www.dpikorea.org>
에이블뉴스 : TEL. (02)792-7785 · FAX. (02)792-7786 · <http://www.ablenews.co.kr>